###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41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윤준병·조계원·이원택

송옥주 • 박홍배 • 문대림

박희승ㆍ허종식ㆍ허 영

장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 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25년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발표된 FTA에 따라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소득 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할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을 농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은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약 13년이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쌀·밭작물·시설원예·과수·축산 등은 생산구조 자체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급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법률 제 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품목별 상한액은"을 "상한액은"으로,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3천500만원의"를 "6천500만원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	른 피해보전) ①
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	
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	
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	
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	
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u>10년</u>	<u>20년</u>
<u>간</u> 시행한다.	<u>간</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
출방법) ① ~ ③ (생 략)	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
	<u></u> 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	<b>4</b>
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	<u>상한액은</u>
<u>은</u>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u>5천</u> 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u>3천</u> 500만원의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생략)

	8 <u>천만원</u>
	<u>6천500</u>
<u>만원의</u>	<u>품목별 특</u>
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	
⑤ (현행과 같음)	